

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장 혁신활동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널리 홍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일터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8월 20일

고용노동부장관

‘26년도 「일터혁신 우수기업」 선정

I

추진배경

- ☐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일터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기업(사업장)을 발굴·선정해 사회저변으로 일터혁신 문화 확산

* 개별 사업장의 일터혁신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과 바람직한 일터혁신 사업장 모델을 제시하여 민간의 발전전략 수립 지원

일터혁신이란?

-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①기업의 성과(생산성·품질수준)와 ②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제고하기 위한 현장의 지속적·조직적인 혁신활동
 - ‘협력적 노사관계’와 ‘근로자 참여’를 바탕으로 한 현장혁신 활동 → 생산성 향상 → 근로자 보상 확대 강화

II

「일터혁신 우수기업」 선정 계획

- **(수행주체)** 고용노동부, 노사발전재단
- **(평가항목)** ①리더십과 실행체계 ②참여 ③숙련 ④동기부여 ⑤성과, 5개 부문에 대한 정량 또는 정성 지표로 구성
- **(신청기간)** '26.8.20.(목) ~ 9.18.(금)
- **(인센티브)** 사업장 정부포상(고용노동부 장관상) 등

지원내용	세부내용	담당기관
■ 정부포상	고용노동부 장관상	고용노동부
■ 홍보	현판·선정패·우수기업 마크 사용	
	언론홍보	
■ 노사문화 우수기업	10점 가점	
■ 고용장려금	창출장려금·안정장려금 5점 가점	노사발전재단
■ 일터혁신 관련 사업 (컨설팅, 교육 등)	우대	
■ 클린사업	우대	
■ 신용보증시 보증한도	우대	

- **(사업절차)** ①사업공고 → ②참여 신청 → ③1차평가(서면심사) → ④1차 통과기업 선정 → ⑤2차평가(PT심사) → ⑥최종선정 → ⑦시상

III

일터혁신 우수기업 선정 세부 추진사항

1. 신청 및 방법

① 신청자격

- **(대상)**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,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터혁신 성과가 우수한 국내 소재 사업장(접수 마감일 기준)
 - － 단,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한하며, 노사공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

결격사유

-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(접수 마감일 기준)
 -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
 -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
 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
 -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거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 -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,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
 -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, 「지방세기본법」 등에 의거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장

② 신청방법

- (신청기간) '26.8.20.(목) ~ 9.18.(금)
- (신청서류) 노사동반으로 신청된 서류만 접수하며, ①참여신청서, ②일터혁신 추진실적, ③추진실적 증빙자료 제출(제출서식 참조)

연번	구비서류	작성방법
1	지원신청서 (노사동반 신청)	온라인 작성 및 서명된 스캔본 제출
2	일터혁신 추진실적	양식에 따라 한글파일로 제출
3	추진실적 증빙자료	한글파일 또는 PDF파일 스캔본 제출

- (신청방법) 노사발전재단 이메일(hpws@nosa.or.kr)로 신청
 - 중소기업·대기업·공공기관을 구분*하여 신청
 - * (중소기업·대기업) 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」에 따른 '우선지원 대상기업'을 중소기업으로 보며, 그 외에는 대기업으로 간주
 - (공공기관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

2. 심사 및 선정

<1> 사전검증 실시

- 신청기업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노사대립·갈등적 요소* 등에 대해 사전검증 실시

* ▲ 최근 3년 이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용재결
 ▲ 최근 3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여부 및 내용 등

- 노사발전재단은 고용노동부(본부)와 함께 신청기업이 신청대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1차 심사대상 확정

<2> 1차 서면 심사

- 신청기업의 일터혁신 추진실적에 대하여 항목별 배점 내에서 별도로 제공된 평가방법에 기초해 서면심사 실시

－ 심사위원 점수를 평균하여 고득점순으로 2차 심사대상 선정

* 최종 선정 목표(15개소)의 1.3배수 이내로 선정

<1차 심사기준>

심사항목		심사기준	배점
추진력 (200)	1. 리더십과 실행체계 (200)	1-1. 리더십	100
		1-2. 실행체계	100
과정 (650)	2. 참여 (160)	2-1. 노사협력 체계 구축	60
		2-2. 참여 혁신 활동	100
	3. 숙련 (290)	3-1. 인적자원개발 계획 및 투자	120
		3-2. 채용 및 숙련향상	60
		3-3. 일하는 방식 개선 활동	110
	4. 동기부여 (200)	4-1. 임금 및 평가 체계	120
4-2. 근로시간과 고용구조개선		80	
성과 (150)	5. 성과 (150)	5-1. 공통성과지표	90
		5-2A. 선택성과지표(제조업)	60
		5-2B. 선택성과지표(비제조업)	60
(감점)	3년이내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(1건당 15점) 3년이내 노동관계법위반 기소의견 송치 및 과태료 부과 (1건당 15점) 3년이내 노동관계법위반 사실(1건당 10점)		-
총점			1,000

<3> 2차 사례발표(PT) 심사

- 1차 서류심사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등
- 사례발표(PT) 점수가 높은 순으로 '일터혁신 우수기업' 최종 선정

<4> 일터혁신 우수기업 선정 흐름도

추진절차	추진내용	추진일정
참여기업 신청	(신청기업) 신청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제출	8.20.~9.18.
▼		
사전검증	(운영기관) 일터혁신 우수기업 참여기업 선정	9.21.~9.30.
▼		
1차 심사	(운영기관) 1차 심사위원회 운영	10월 1주~3주
▼		
2차 심사	(운영기관) 2차 PT 심사위원회 운영 (참여기업) 일터혁신 실적 PT발표	10월 4주
▼		
일터혁신 우수기업 선정	(운영기관) 일터혁신 우수기업 선정 공고	11월초
▼		
시상식 개최	(운영기관) 일터혁신 현판 및 선정패 등 전달	11월말
▼		
우수기업 홍보	(운영기관) 우수기업 홍보	12월 중
▼		
사후관리	(운영기관) 사업장 사후관리(선정 후 3년)	선정 후 3년

3. 선정기업 지원

- **(유효기간)** 일터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
- **지원내용**

지원내용	세부내용	담당기관
■ 정부포상	고용노동부 장관상	고용노동부
■ 홍보	현판·선정패·우수기업 마크 사용	
	언론홍보	
■ 노사문화 우수기업	10점 가점	
■ 고용장려금	창출장려금·안정장려금 5점 가점	노사발전재단
■ 일터혁신 관련 사업 (컨설팅, 아카데미 등)	우대	
■ 클린사업	우대	
■ 신용보증시 보증한도	우대	
		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		신용보증기금

IV

선정취소 및 철회

① 요건 및 효력

- **(선정취소)**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되었거나,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선정 이전 또는 이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 - － 우수기업 선정 취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장래의 우대조치 철회하고, 향후 3년 간 신청자격을 박탈

② 취소시기 및 절차

- 유효기간(3년) 중 취소사유 발생 시 수시로 조사·결정
- 취소사유 발생 → 해당기업 조사 → 선정취소심의회* 개최 및 결정
 - * 선정당시 또는 최근 심사위원회에 준하여 구성·운영하되, 필요시 서면심사

V

기타사항

□ 사업문의처

- (운영기관)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
- (전화) 02-6021-1210, 1214, 1225 ○ (이메일) hpws@nosa.or.kr

평가지표		우수기업 선정 평가지표		
범주	평가항목	세부평가내용	배점	유형
1.리더십과 실행체계 (200)	1-1. 리더십 (100)	1-1-가. CEO 및 경영진의 일터혁신 인사철학/방침	50	정성
		1-1-나. CEO 및 경영진의 일터혁신 의지와 일터혁신 관련 주도적 활동	50	정성
	1-2. 실행체계 (100)	1-2-가. 일터혁신 전략 및 방침(계획) 수립여부	50	정성
		1-1-나. 일터혁신 전략의 실행체계 운영 실적	50	정성
2.참여 (160)	2-1. 노사협력 체계 구축 (60)	2-1-가. 노사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실적 (하위문항 2개)	30	정성 정량
		2-1-나. 고충처리해결절차 및 활용 실적	30	정성
	2-2. 참여혁신 활동 (100)	2-2-가. 문제해결을 위한 소집단 활동 (하위문항 2개)	30	정량 정성
		2-2-나. 제안활동 추진실적 (하위문항 4개)	40	정성 정량
		2-2-다.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사적 품질개선 활동 (하위문항 2개)	30	정량 정성
3.숙련 (290)	3-1. 인적자원 개발 계획 및 투자 (120)	3-1-가. 인적자원개발 계획 수립 및 적합 방법 활용 (하위문항 2개)	30	정성
		3-1-나. 연간 교육훈련 근로자 참여율	20	정량
		3-1-다. 총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 투자비용 비중	20	정량
		3-1-라. 1인당 교육훈련 시간	20	정량
		3-1-마. 인적자원개발 성과 (하위문항 2개)	30	정량 정성
	3-2. 채용 및 숙련향상 (60)	3-2-가. 채용 (하위문항 2개)	20	정성
		3-2-나. 직무능력 향상 숙련체계 (하위문항 2개)	40	정성
	3-3. 일하는 방식 개선활동 (110)	3-3-가. 업무표준화 실적	30	정성
		3-3-나. 업무프로세스 개선 실적 (하위문항 2개)	50	정성 정량
		3-3-다. 스마트기술 활용도	30	정성
4.동기부여 (200)	4-1. 임금 및 평가체계 (120)	4-1-가. 동종업계 유사규모 대비 상대적 임금수준	40	정성
		4-1-나. 성과배분 (하위문항 3개)	50	정성
		4-1-다. 공정한 평가체계	30	정성
	4-2. 근로시간과 고용구조 개선(80)	4-2-가.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 및 성과 (하위문항 3개)	50	정성 정량
		4-2-나. 고용구조 및 고용구조 개선 실적 (하위문항 2개)	30	정량
5.성과 (150)	5-1. 공통성과지표 (90)	5-1-가. 이직률 감소 추이 (최근 2년)	30	정성
		5-1-나. 고용율 증가 추이 (최근 2년)	30	정량
		5-1-다. 산업재해율 (최근 2년)	30	정량
	5-2A. 선택성과지표 제조업 (60)	5-2-가. 노동생산성 증가 추이 (최근 2년)	30	정량
		5-2-나. 기업특성 반영 성과지표 동종업계 유사규모 업체 대비 수준 (영업이익률, 불량감소율, 납기준수율 등)	30	정성
	5-2B. 선택성과지표 비제조업 (60)	5-2-가. 고객서비스 만족도 증가 추이 (최근 2년)	30	정량
		5-2-나. 기업특성 반영 성과지표 동종업계 유사규모 업체 대비 수준 (판로 개척도, 클레임 제거율, 서비스 재구매율, 공공기관 평가등급 등)	30	정성
총점			1,000	